

通常、京都大学学生証は入学許可書を発行した学部・研究科等が発行します。

学生証は、本学の学生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もので、常に携帯し、本学教職員から請求があれば提示してください。他人に貸与または譲与してはなりません。紛失・盗難・異常があったときには、所属学部・研究科等の教務担当窓口へ申し出てください。学生割引の詳細は、P.29の「交通機関の学生割引（学割）」を読んでください。

正規生（学位取得を目的とする）

正規生の学生証は、附属図書館や情報環境機構（IIMC）・学術情報メディアセンター（ACCMS）の利用証を兼ねています。京都大学構内の各施設への入退館認証、証明書自動発行機による在学証明書（和・英文）や学生生徒旅客運賃割引証（学割証）等の発行にも使えます。学生割引や通学証明書によって乗車券・通学定期乗車券を購入・使用するときは、交通機関関係員の要求があれば学生証を提示してください。

また、正規生の学生証は京大生協組合員証を兼ねることができ、加入した組合員は電子マネーが利用できます。

非正規生（学位取得を目的としない）

研究生や交換留学生等の非正規生の身分証明書は、正規生の学生証とは異なるため、附属図書館およびIIMC・ACCMSの利用には、図書館利用証の申請が別途必要です。また、非正規生は通常、交通機関の学割の対象外となっています。



(正規生の学生証の見本)

授業料の免除

学部および大学院正規生で、経済的に困難な状況にあり、学業成績が優秀な学生に対して、授業料の全額または半額を免除する制度です。ただし、免除できる人数に限りがあります。なお、出願手続は、前期分を2月初旬に、後期分を7月初旬に掲示でお知らせします。希望者は願書等を受領し、必要書類を所属学部・研究科等の教務掛等担当窓口（学部1・2回生は学務部奨学厚生課奨学掛）へ提出してください。

京都大学では、暴風警報発令時および公共交通機関運行休止時の全学共通科目の授業・試験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定めています。

暴風警報の発令・解除及び交通機関の運行の確認

暴風警報の発令・解除および公共交通機関の運行は、テレビ・ラジオ等の報道機関で確認してください。

授業休止、試験延期

下記のいずれか一つの場合、授業休止、試験延期になります。

- ① 京都市又は京都市を含む地域に暴風警報が発令された場合。
- ② 京都市営バスが全面的に運行休止の場合。
- ③ JR西日本（京都発着の在来線）、阪急電車（河原町一梅田間）、京阪電車（出町柳一淀屋橋又は中之島間）、近鉄電車（京都一西大寺間）のうち、3つ以上の交通機関が全面的または部分的に運行休止の場合。
- ④ 国際高等教育院長の判断による場合。

なお、授業中又は試験中に暴風警報が発令された場合は、原則として実施中の授業・試験については休止又は延期せず、その次の時限から休止又は延期の措置を取ります。

暴風警報の解除、公共交通機関の運行再開による授業・試験の実施

暴風警報が解除された場合、または公共交通機関の運行が再開された場合は、以下の基準により授業・試験を実施します。

- ① 6:30までに解除・運行再開の場合は、平常どおり一時限（8:45）から実施します。
- ② 6:30から10:30までに解除・運行再開の場合は、午前授業を休止し、三時限（13:00）から実施します。
- ③ 10:30を経過しても解除・運行再開されない場合は、全日授業休止となります。

授業休止または試験延期後の措置

- ① 授業休止のため、補講がおこなわれる場合は、クラス（KULASIS）及び全学共通科目専用掲示板（吉田南1号館1階）でお知らせします。
- ② 試験延期の場合は、延期当日を含めた3日以内に、クラス（KULASIS）及び全学共通科目専用掲示板（吉田南1号館1階）で指示します。

학생증

통상적으로 교토대학 학생증은 입학허가증을 발행한 학부·연구과가 발행합니다.

학생증은 본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항상 휴대하고 본교 교직원이 제시를 요구할 시는 제시해 주십시오. 또, 학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여해서는 안됩니다. 분실·도난·이상이 있었을 때에는, 소속 학부·연구과 등의 교무담당 창구에 자청해 주십시오. 학생할인에 관한 상세한 것은 P.30의 '교통기관의 학생할인(Gakuwan)'을 참조하십시오.

정규생(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함)

정규생의 학생증은 Main Library, Institute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IMC)과 Academic Center for Computing and Media Studies (ACCMS)의 이용증을 겸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 구내의 각 시설 출입시 인증을 비롯해, 증명서 자동발행기에 의한 재학증명서(일문·영문)와 학생여객운임할인증(학생할인증)등의 발행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할인이나 통학증명서로 승차권·통학정기승차권을 구입·사용할 때에는 교통기관 담당자의 요구가 있으면 학생증을 제시하십시오.

또한, 정규생의 학생증은 교토대학 생협조합원증을 겸할 수 있으며, 가입한 조합원은 전자머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생(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연구생이나 교환유학생 등의 비정규생의 신분증명서는 정규생의 학생증과는 다르므로 Main Library, IIMC 및 ACCMS의 이용에는 도서관 이용증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생은 통상적으로 교통기관의 학생할인 대상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생의 학생증의 견본)

수업료 면제

학부 및 대학원 정규생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용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서제출수속은 전기분을 2월 초순에, 후기분을 7월 상순에 게시판을 통해 통지합니다. 희망자는 원서 등을 수령하여 구비서류를 소속 학부·연구과의 교무과 등 담당창구(학부 1·2년생은 Student Scholarship and Welfare Division)에 제출하십시오.

폭풍경보 발령시의 수업·시험

교토대학에서는 폭풍경보 발령시 및 공공교통기관 운행정지시, 전학년 공통과목의 수업·시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풍경보의 발령·해제 및 교통기관의 운행 확인

폭풍경보의 발령·해제 및 공공교통기관의 운행은 텔레비전·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휴강, 시험연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휴강, 시험을 연기합니다.

- ① 교토시 또는 교토시를 포함하는 지역에 폭풍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 ② 교토 시영버스가 전면적으로 운행 정지된 경우.
- ③ JR West Train (교토 발착의 재래선), Hankyu Train (Kawaramachi-Umeda간), Keihan Train (Demachiyanagi-Yodoyabashi 또는 Nakanoshima간), Kintetsu Train (Kyoto-Saidaiji간) 중, 세 개 이상의 교통기관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 ④ 국제고등교육원(Academy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장의 판단에 의한 경우.

덧붙여, 수업중 또는 시험중에 폭풍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시 중인 수업, 시험에 대해서는 중지 혹은 연기하지 않고, 그 다음 시간부터 중지 또는 연기합니다.

폭풍경보의 해제, 공공교통기관의 운행 재개에 따른 수업·시험의 실시

폭풍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 또는 공공교통기관의 운행이 재개되었을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업·시험을 실시합니다.

- ① 6:30까지 해제·운행 재개될 경우는 평상시대로 1교시(8:45)부터 실시합니다.
- ② 6:30부터 10:30까지 해제·운행 재개될 경우는 오전 수업을 휴강하고, 3교시(13:00)부터 실시합니다.
- ③ 10:30을 경과해도 해제·운행 재개되지 않을 경우는 종일 휴강입니다.

휴강 또는 시험연기 후의 조치

- ① 휴강으로 인해 보강이 실시될 경우는 Kyoto University Liberal Arts Syllabus Information System (KULASIS) 및 전학년 공통과목 전용 게시판(요시다 미나미1호관1층)에서 통지합니다.
- ② 시험이 연기될 경우는 연기 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KULASIS 및 전학년 공통과목 전용 게시판(요시다 미나미1호관1층)에서 지시합니다.

休学・復学・退学を希望する者は、まず指導教員に相談してから、所属の学部・研究科等事務室に手続きを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休学願

疾病や事故等により3ヶ月以上の休学を希望する場合は、速やかに願い出てください。病気による休学願には、医師の診断書を添付してください。休学期間満了後も、引き続き休学する必要がある場合は、許可されている期間が終わる前に、休学の延長を願い出てください。

学期の初めから休学する場合は、その学期の授業料全額が免除されます。学期の途中から休学する場合は、その学期の授業料全額を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なお、学期の最初の月（4月・10月）に休学する場合は、当該月1ヶ月分の授業料を払い、当該学期を休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学期の途中で復学する場合は、当該学期について、復学する前月までの授業料を月割りで免除します。

留学生が長期に渡って休学する場合、日本での滞在理由（入院等）が無い限り、一旦帰国することになります。休学中、帰国せず、滞在理由無く日本に滞在していた場合、在留期間の更新、及び在留資格変更の際に不利になります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

休学中は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復学願(届)

病気による休学後に復学しようとする場合は、本学所定の「京都大学復学診断書」により医療機関の診断を受け、その診断書と共に「復学願」を提出してください。

病気以外の理由による休学で休学期間内に復学しようとする場合は「復学届」を提出してください。届出がなかった場合は、休学許可全期間を休学したものと取り扱われます。

休学期間中、母国に一時帰国していた留学生が復学を希望する場合、在留期間内で（入国管理局発行の再入国許可が）あれば、再度来日し、復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休学のため一時帰国する際、復学を希望するのであれば、出国前に必ず在留期限等の確認をしてください。

退学願

退学する場合は、願い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退学願を出さなかったり、許可されないまま通学をやめた場合は、引き続いて在学しているものとして取り扱われ、授業料の支払い等が求められます。

在留資格“留学”は大学に在籍している間は有効です。退学等により学籍を失った場合には、大学を離脱した日より14日以内に入国管理局へ届け出て、例えば在留期限が残っていたとしても、すみやかに日本を出国するか、又は引き続き日本に滞在する場合は在留資格を変更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学生への連絡・通知は、原則として所定の掲示板での掲示により行われ、一度掲示した事項は周知されたものとして取り扱います。掲示を見落としのために生じる不都合・不利益は本人の責任となります。

引越などで連絡先が変わった時は、すぐに所属学部・研究科等事務室と留学生課に報告してください。

最近、学生本人または家族に「京都大学事務局ですが、保護者又は学生の電話番号と住所を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電話照会が頻発しています。京都大学がそのような問い合わせを行うことは一切ありませんので、絶対に教えないで下さい。

定期健康診断の受検義務

京都大学では、毎年4月に、学生一般定期健康診断を実施します。日程の詳細は所属の学部・研究科等の掲示板にてお知らせします。本学学生は、実施期間内に必ず受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健康診断を受けなかった学生は定期試験を受験できないだけでなく、奨学金や入学試験等に必要健康診断書等も発行されません。

課外活動

課外教養の行事

京都大学では、正課外に次のような文化関係諸行事を実施しています。行事の詳細案内は、京都大学ホームページや掲示板を通じて行います。

①音楽会

毎年創立記念日である6月18日前後に、著名な音楽家を招き、音楽会を催しています。

②能楽鑑賞会

毎年12月中旬に、(財)片山家能楽・京舞保存財団の協力による能および狂言の鑑賞会を催しています。すべて日本の古語で行われます。

11月祭(NF)

京都大学では、毎年11月下旬に11月祭を行います。例年、大学生、一般人など約3万人が参加し、研究成果の発表や講演会、映画、音楽、展示会、模擬店などがキャンパスに出現します。11月祭は、2013年で55回目を迎えます。

キャンパスメンバーズ

本学学生証等を提示すると、京都国立博物館・奈良国立博物館・京都国立近代美術館の平常展や、茶道資料館の特別展・通常展を無料で観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詳しくは京都大学ホームページ（トップ>教育トップ>施設案内 博物館などの利用）をご覧ください。

휴학·복학·퇴학을 희망하는 자는 우선 지도교원과 상담 후, 소속 학부·연구과 사무실에 수속을 문의하십시오.

휴학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휴학을 희망할 경우는 신속하게 신청하십시오. 병으로 인한 휴학계인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십시오. 휴학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허가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학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학기 초부터 휴학할 경우는 그 학기의 수업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학기 도중에 휴학할 경우는 그 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학기 첫달(4월·10월)에 휴학할 경우는, 해당하는 달의 1개월분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해당학기를 휴학할 수 있습니다. 학기 도중에 복학할 경우는 해당 학기에 대해서 복학하는 앞달까지의 수업료를 월당 계산으로 면제합니다.

유학생이 장기에 걸쳐 휴학할 경우, 일본에서의 체재이유(입원 등)가 없는 한, 일단 귀국해야 합니다. 휴학 중 귀국하지 않고 체재이유 없이 일본에 체재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재류기간의 갱신 및 재류자격 변경 시에 불리해지므로 주의하십시오.

휴학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복학계(신고)

병으로 인한 휴학 후, 복학 할 경우는 본교 소정의 '교토대학 복학진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와 함께 '복학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 이외의 이유로 인한 휴학으로 휴학기간 내에 복학하고자 할 경우는 '복학신고'를 제출하십시오. 신고가 없었을 경우는 휴학허가 전기간을 휴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휴학기간 동안 모국에 일시 귀국했던 유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재류기간 이내(입국관리국이 발행한 재입국허가)라면 다시 일본에 와서 복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으로 인해 일시 귀국할 시,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출국전에 반드시 재류기한을 확인하십시오.

퇴학계

퇴학할 경우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학계를 내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채 통학을 그만둘 경우, 계속하여 재학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업료 납부 등이 요청되므로, 주의하십시오.

재류자격 '유학'은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은 유효합니다. 퇴학 등에 의해 학적이 소실된 경우에는 재류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학을 이탈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청하고, 신속하게 일본을 출국해야 합니다. 혹은,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는 재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생으로의 연락·통지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번 게시한 사항은 주지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유학생인 경우라도 연락·통지·정보제공 등은 통상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게시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사 등으로 연락처가 바뀌었을 시는 신속하게 소속 학부·연구과 사무실과 Foreign Student Division에 보고하십시오.

최근, 학생본인 또는 가족에게 '교토대학 사무국인데, 보호자 또는 학생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전화 조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토대학이 그러한 문의를 하는 일은 일체 없으므로 절대로 가르쳐 주어서는 안됩니다.

정기건강진단의 검사의무

교토대학에서는 매년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학생일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소속 학부·연구과의 게시판에서 통지합니다. 본교 학생은 실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은 정기시험을 수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이나 입학시험 등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수업외 활동

과외교양 행사

교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관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교토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알립니다.

① 음악회

매년 창립기념일인 6월 18일 전후로 저명한 음악가를 초대하여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② 노가쿠감상회

매년 12월 중순에 재단법인 가타야마케 노가쿠·교토고전무용 보존재단의 협력에 의한 노가쿠 및 교겐 감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본의 고어로 진행됩니다.

11월제(NF)

교토대학에서는 매년 11월 하순에 11월제를 개최합니다. 예년 대학생, 일반인 등 약3만명이 참가하며 연구성과의 발표나 강연회, 영화, 음악, 전시회, 포장마차 등이 캠퍼스에 펼쳐집니다. 11월제는 2013년에 55회째를 맞이합니다.

Campus Members

본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교토 국립 박물관, 나라 국립 박물관,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의 상설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도자료관의 특별전·통상전도 무료입니다. 상세한 것은 교토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영어판 : Home> Education> Campus Life >Welfare Provisions> Museums and Other Facilities)